

토석채취변경신고서

(앞쪽)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5일
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	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	

산지 소유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산지 소재지	
---------------	--

산지편입 면적	토석채취장	부대시설					완충구역
		계	산물처리장	진입로	관리사무소	그 밖의 시설	
		m ²					

토석채취 및 반출기간		입목벌채 (굴취)기간	
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

토석채취 계획	용도	토석의 종류	신고량			채취방법
			매장량	가채매장량	반입량	
			m ³	m ³	m ³	

입목벌채	벌채구역면적	나무의 종류	본수	나무부피
	m ²		본	m ³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사유

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* 첨부서류,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, 수수료, 처리절차: 뒤쪽 참조

<p>첨부서류</p>	<p>1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.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(이하 "측량업자등"이라 합니다)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(연차별 생산·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</p> <p>2.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.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.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.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.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.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(쇄골재용 석재의 굴취·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바.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(건축용·공예용·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·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</p> <p>3.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: 없음</p> <p>4.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.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.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(쇄골재용 석재의 굴취·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다.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(건축용·공예용·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·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라.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</p> <p>5.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.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(쇄골재용 석재의 굴취·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나.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(건축용·공예용·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·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다.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</p> <p>6.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.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(연차별 생산·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나. 복구공종·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</p> <p>7.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: 토석 반입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</p>	<p>수수료 없음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p>1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	

처리절차

